

2021년도 하반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상세 안내문

(인터넷 접수자용)

2021. 7.

순 서

1. 시험일정	1
2. 제출서류 등(원서접수 유형, 응시자격, 결격사유, 합격기준 등)	1
3. 시험과목 및 시간	4
4. 일부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6
5-1.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자격증에 따른 면제과목)	8
5-2. 자격증 취득자 상세 입력 항목 안내	14
6. 국가기술자격별 상위 자격증 현황	24
7. 국가기술 자격증 연혁	26
8.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경력증명서(공단 서식)	35
9.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법정 서식)	37
10.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환불신청서(공단서식)	39
11. 원서접수처 및 시험 장소	40
12. 자주하는 질문	41

2021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격과 면제되는 과목안내

1.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21.07.28.(수) 11:00부터~ 시험 7일전 18:00까지	8.23(월)~8.26(목), 10.25(월)~10.28(목), 12.27(월)~12.30(목)	8.23(월)~8.26(목), 12.27(월)~12.30(목)	시험 종료 직후

■ 인터넷 접수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https://lic2.kotsa.or.kr/>)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모바일 접수 가능

2. 제출서류 등(원서접수 유형, 응시자격, 결격사유, 합격기준 등)

응시 대상자		제출서류	제출방법
전 과목 응시자		○ 사진 1매(사진 파일 업로드)	서류 제출자는 파일 첨부
일 부 과 목 면 제 자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p.8~13 참고)	○ 사진 1매(사진 파일 업로드)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 입력(자격번호, 취득일 등)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공단서식)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해당 분야 실무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인턴 및 다수 경력 기간 합산 가능) ※ 추가 서류 제출자는 파일 첨부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자 (도로분야만 해당)	○ 사진 1매(사진 파일 업로드) ○ 교육 수료번호 입력 (수료증 왼쪽 상단 수료번호로 수료여부 확인p.16참고)	
	석사학위취득자	○ 사진 1매(사진 파일 업로드) ○ 석사학위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 학위수여일과 학위등록번호가 표시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교통법규 제외) - 시험과목과 이수 과목 명칭이 상이할 경우 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교통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 위·변조 시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자격 취소

○ 원서접수 유형별 안내

－ 인터넷 접수 : 모든 응시자

- ※ 단, 항만분야 「선박직원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 ※ 취득 자격증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면제기준을 참고하여 제출(p.8~14 참고)
- ※ 자격증에 의한 일부 면제자인 경우 인터넷 접수 시 자격증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추가 서류 제출자는 파일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 안내(제출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

▶ 공통사항

- － 응시원서(사진 업로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3.5×4.5cm)
- － 시험수수료 : 2만원

※ 환불 : 접수기간내 전액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 일부과목면제자

-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지참 : 인터넷 접수 시 자격증 정보를 입력
- － 교육 수수료증(해당자만) : 인터넷 접수 시 수수료번호 입력
- － 자격취득사항확인서(해당자만)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 －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서식 사용(공단서식 참조)
 - ※ 자격증별 경력 인정 기준은 자격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 고용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만)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 발급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해당자만) : 업체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
- － 학위 및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 발행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학위 및 성적증명서 제출자는 인터넷 접수 시 해당 서류 스캔파일을 첨부하여야 함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다만, 교통안전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 불가)

☞ 단, 외국인의 경우 시험접수 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확인

- ▶ 교통안전관리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원서접수 마감 후 범죄경력을 확인하며, 추후 발견 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합격 및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사실 및 자격이 취소되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합격자 결정

- ▶ 응시 과목마다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자격증 교부 신청

- ▶ 시험 종료 직후부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별 자격증 신청·교부장소(공휴일·토요일 제외)
(p. 40 참고)

※ 자격증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수수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결격사유 확인 후 즉시 반환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 발급방법
 - 인터넷 :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서 발급(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 가정법원(지원포함)/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포함)에서 발급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 우편 :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회송용 봉투(주소 기입, 우표 부착), 수수료
 - ※ 가정법원이 아니거나 우편발급의 경우 해당 법원에 사전 문의 필요
- ▷ 수수료 : 현금 1,200원(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
- ☞ 가까운 법원 주소 및 안내전화 검색 방법
'대한민국 법원(<http://www.scourt.go.kr>)' 접속 - 각급법원 - 검색창에 법원명 또는 지역 검색

3. 시험과목 및 시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 6])

구 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중 택일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자동차관리법」 3) 「도로교통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중 택일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 「철도안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철도공학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중 택일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공안전법」 3) 「항공보안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항공기체	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중 택일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만운송사업법」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하역장비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중 택일
5. 석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궤도운송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석도구조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중 택일

※ 교통법규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모두 포함

(법규과목의 시험범위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에서 출제 됨)

▶ 시험과목의 시간 및 문제 수

구분	오전 시험	오후 시험	과목	문항 수 (배점)	비고
1교시	09:20 ~ 10:10 (50분)	13:20 ~ 14:10 (50분)	교통법규	50문항 (2점)	- 도로, 삭도 · 교통안전법 : 20문제 · 기타법규 : 30문제 - 철도, 항공, 항만 · 교통안전법 : 10문제 · 기타법규 : 40문제
쉬는 시간	10:10 ~ 10:30 (20분)	14:10 ~ 14:30 (20분)	-		
2교시	10:30 ~ 11:45 (75분)	14:30 ~ 15:45 (75분)	- 교통안전관리론 - 분야별 필수과목 - 선택과목	각 25문항 (4점)	과목당 25분 * <u>면제과목을 제외한</u> <u>본인 응시 과목만</u> <u>응시 후 퇴실</u>

- * 지참물 : 응시원서, 신분증(공학용 계산기 지참 가능하나 시험 시작 전 초기화 및 메모리카드 제거 필요)
- ** 철도분야의 경우 「교통안전법」 및 기타 법규의 문제 수가 1~3개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체 문제수는 50문제 동일)

4. 일부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 7])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되는 시험과목
1.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능사·철도토목기능사·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전기 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3. 항공교통 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체정비기능사·항공기관정비기능사·항공장비정비기능사 또는 항공 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활공기는 제외한다), 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활공기는 제외한다)	
4. 항만교통 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선체건조기능사·동력기계정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선박직원법」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5. 석도교통 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선택과목

비고

1.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정비”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2.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자는 교통법규만 응시

5-1.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자격증에 따른 면제과목)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필수 및 선택과목 면제대상 자격증(11개)

관련법	자 격 명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기준)	면제과목	
	변경후(현재)	변경(통합)전			
국 가 기 술 자 격 법	1) 건설기계정비기능장	1)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자격증 정보 입력	- 필수과목(자동차정비) - 선택과목	
	2) 건설기계정비기사	2) 건설기계정비기사			
	3)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3)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4) 건설기계정비기능사 (‘12.01.01 이후)	4a)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11.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4b)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11.12.31 이전)			
	5) 자동차정비기능장	5) 자동차정비기능장	- 자격증 정보 입력		
	6) 자동차정비기사 (‘12.01.01 이후)	6a) 자동차정비기사 (‘11.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첨부	- 필수과목(자동차정비) - 선택과목	
		6b) 자동차검사기사 (‘11.12.31 이전)		- 선택과목	
	7)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2.01.01 이후)	7a)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12.31 이전)		- 필수과목(자동차정비) - 선택과목	
		7b) 자동차검사산업기사 (‘11.12.31 이전)		- 선택과목	
	8) 자동차정비기능사 (‘12.01.01 이후)	8a) 자동차정비기능사 (‘11.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첨부	- 필수과목(자동차정비) - 선택과목	
8b) 자동차검사기능사 (‘11.12.31 이전)					
9)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9)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10) 산업안전기사	10) 산업안전기사	- 자격증 정보 입력	- 선택과목		
11) 산업안전산업기사	11) 산업안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경력의 구분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 검사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경력 3년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정비업소가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 중 하나의 정비업으로** 관할 관청에 허가되어야 합니다.(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명칭 변경 이력>

변경 전 ('13.6.17 이전)		변경 후 ('13.6.17 이후)	작업범위	비고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	좌동	모든 종류의 구조변경 작업	가능
2급	소형자동차정비업	좌동	(승용,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	
3급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시행규칙 별표26에 따른 작업제한 범위 이외의 구조변경 작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원동기 구조변경 작업	불가능

※ 1 ~ 3급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 군 경력의 경우, 수송 또는 정비 특기로 3년 이상 해당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군경력증명서 첨부)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필수 및 선택과목 면제대상 자격증(21개)

관련법	자 격 명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기준)	면제과목	
	변경후(현재)	변경(통합)전			
국 가 기 술 자 격 법	1) 철도차량정비기능장	1) 철도차량정비기능장	- 자격증 정보 입력	필수과목(철도공학) 선택과목	
	2) 철도차량기사	2) 철도차량기사			
	3) 철도차량산업기사 ('09.01.01 이후)	3a)철도차량산업기사 ('08.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첨부		선택과목
		3b)객화차정비산업기사 ('08.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3c)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08.12.31 이전)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3d)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08.12.31 이전)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첨부		
	4) 철도토목기사 ('14.01.01 이후)	4) 철도보선기사 ('13.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필수과목(철도공학) 선택과목	
	5) 철도토목산업기사 ('14.01.01 이후)	5) 철도보선산업기사 ('13.12.31 이전)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6) 철도차량기술사	6) 철도차량기술사	- 자격증 정보 입력	선택과목	
	7) 철도신호기술사	7) 철도신호기술사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8) 철도신호기사	8) 철도신호기사			
	9) 철도신호산업기사	9) 철도신호산업기사			
	10) 철도전기신호기능사 ('12.01.01 이후)	10a)철도신호기능사			
		10b)전기철도기능사 ('11.12.31 이전 면제불가)			
	11) 철도운송산업기사	11) 열차조작산업기사			
	12) 현재폐지 ('09.01.01 이후)	12) 철도운송기능사 ('08.12.31 이전)			
	13) 철도토목기능사 ('14.01.01 이후)	13) 보선기능사 ('13.12.31 이전)			
	14) 철도차량정비기능사 ('09.01.01 이후)	14a)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08.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선택과목
		14b)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08.12.31 이전)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14c)객화차정비기능사 ('08.12.31 이전)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첨부		
	15) 산업안전기사	15) 산업안전기사	- 자격증 정보 입력		
	16) 산업안전산업기사	16) 산업안전산업기사			
	철 도 안 전 법	17)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18) 디젤차량운전면허			
		19)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20)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21) 철도장비운전면허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필수 및 선택과목 면제대상 자격증(22개)

관련법	자 격 명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기준)	면제과목
	변경후(현재)	변경(통합)전		
국 가 기 술 자 격 법	1) 항공기관기술사		- 자격증 정보 입력	- 선택과목
	2) 항공기사			
	3) 항공기체기술사			- 필수과목(항공기체) - 선택과목
	4) 항공산업기사			
	5)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자격증 정보 입력 - 경력증명서(공단서식사용) 첨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첨부	- 선택과목
	6) 항공기관정비기능사			
	7) 항공전자정비기능사			
	8) 항공장비정비기능사			
	9) 산업안전기사			
	10) 산업안전산업기사			
항 공 안 전 법	11) 항공기관사		- 자격증 정보 입력	- 필수과목(항공기체) - 선택과목
	12) 항공정비사 (비행기·회전익항공기·비행선, 기체) (‘09.09.11 이후)	12a) 항공정비사(비행기·회전익항공기비행선) (‘09.09.10 이전) 12b) 항공공장정비사(기체) (‘09.09.10 이전)		
	13) 항공정비사(왕복발동기) (‘09.09.11 이후)	13) 항공공장정비사(왕복발동기) (‘09.09.10 이전)		- 선택과목
	14) 항공정비사(터빈발동기) (‘09.09.11 이후)	14) 항공공장정비사(터빈발동기) (‘09.09.10 이전)		
	15) 항공정비사(프로펠러) (‘09.09.11 이후)	15) 항공공장정비사(프로펠러) (‘09.09.10 이전)		
	16)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09.09.11 이후)	16) 항공공장정비사(전자·전기·계기) (‘09.09.10 이전)		
	17) 운송용조종사(활공기 제외)			
	18) 사업용조종사(활공기 제외)			
	19) 자가용조종사(활공기 제외)			
	20) 항공사			
	21) 항공교통관제사			
	22) 운항관리사			

※ 참고

1.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목 면제대상 자격명에서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중 “활공기는 제외”
2. 항공공장정비사는 '09.09.10부터 항공정비사로 명칭 통합됨.

□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필수과목 면제대상자격 : 없음

○ 선택과목 면제대상자격(15개)

관련법	자 격 명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기준)	면제과목
	변경후(현재)	변경(통합)전		
국 가 기 술 자 격 법	1) 조선기술사 (‘05.01.01 이후)	1a) 선박설계기술사 (‘04.12.31 이전)	- 자격증 정보 입력	- 선택과목
		1b) 선박건조기술사 (‘04.12.31 이전)		
		1c) 선박기계기술사 (‘04.12.31 이전)		
	2) 조선기사	2) 조선기사		
	3) 조선산업기사	3) 조선산업기사		
	4)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05.01.01 이후)	4a) 생산기계산업기사 (‘04.12.31 이전)		
		4b)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04.12.31 이전)		
	5) 항로표지기사	5) 항로표지기사		
	6) 항로표지산업기사	6) 항로표지산업기사		
	7) 항로표지기능사	7) 항로표지기능사		
	8) 선체건조기능사 (‘05.01.01 이후)	8a) 선체의장기능사 (‘04.12.31 이전)		
		8b) 선체건조기능사 (‘04.12.31 이전)		
	9) 동력기계정비기능사 (‘02.07.01 이후)	9) 선박기관정비기능사 (‘02.06.30 이전)		
	10) 산업안전기사	10) 산업안전기사		
	11) 산업안전산업기사	11) 산업안전산업기사		
선 박 직 원 법	12) 4급 이상의 항해사		- 자격증 정보 입력	
	13) 4급 이상의 기관사			
	14) 4급 이상의 운항사			
	15) 2급 이상의 통신사			

※ 참고 : 선박직원법에 의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http://lems.seaman.or.kr>)을 통해 면허 발급가능하며, 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함

□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필수과목 면제대상자격 : 없음

○ 선택과목 면제대상자격(2개)

관련법	자 격 명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기준)	면제과목
	변경후(현재)	변경(통합)전		
국가기술훈 자격법	1) 산업안전기사		- 자격증 정보 입력	- 선택과목
	2) 산업안전산업기사			

5-2. 자격증 취득자 상세 입력 항목 안내(인터넷접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응시자(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상세 입력 항목

■ 이름

■ 생년월일(예 : 801231)

■ 자격증번호(예 : 01234567890A) ← ※ 맨 뒤 글자는 반드시 영문

■ 발급(발행)연월일(예 : 20050101) ← ※ 합격연월일이 아닌 최근 발급연월일 기재

■ 자격증 내지번호(예 : 0901234567) ← ※ 2009년 8월 3일 이후 발행자격증만 기재

※ 인터넷 접수 시 위 항목을 상세히 입력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www.q-net.or.kr 자격증 진위 확인 메뉴에서 확인 되어야 함. 또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승인이 완료되어야 과목 면제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진위 확인 기능 안내 :

www.q-net.or.kr Home > 발급/조회센터 > 확인서/자격증 진위확인 > 자격증 진위확인

Q-Net 자격의 모든 것

2016.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정기시험 전문자격시험 발급/조회센터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전체메뉴

홈 | 발급/조회센터 | 확인서/자격증 진위확인 | 자격증 진위확인

일반회원 단체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인인증 로그인

발급/조회센터

자격증 발급 안내

자격증 발급

확인서 발급

자격취득/미발급 조회

확인서/자격증 진위확인

• 확인서진위확인

• 자격증진위확인

• 단체진위확인

자격증 진위확인

이름

생년월일 (법정생년월일 6자리)

자격증번호 (예:12345678901A)

발급(발행)연월일 (예:20050101) ※ 합격연월일이 아닌 최근 발급연월일 기재

자격증내지번호 (예:0901234567) ※ 2009년 8월 3일 이후 발행자격증만 기재

자격증번호 구성 및 내지번호 위치 설명보기

진위 眞(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종목 및 등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현행법령상의 명칭입니다.)

합격 년월일 2002년06월03일

확인 입력초기화

* 진위 확인 된 경우 眞(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됨.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이 있는 응시자(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상세 입력 항목

■ 면허 종별

■ 면허 번호

■ 유효 기간

※ 인터넷 접수 시 위 항목을 상세히 입력하여야 하며, 공단 철도 자격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 면제 과목이 인정됨

☐ 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응시자(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상세 입력 항목

■ 자격명

■ 자격번호

■ 생년월일(예 : 801231)

■ 교부일

■ 한정사항(예 : 기체,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 인터넷 접수 시 위 항목을 상세히 입력하여야 하며, 공단 항공자격시스템에서 확인된 경우 면제 과목이 인정됨

☐ 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응시자(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발급)

※ 자격증 원본 지참(사본 제출)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함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자(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하여 교육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 응시 가능)

○ 교육이수 확인 방법

- ※ 본인인증 및 일정선택 후 교육 수료자에게만 ①번 화면 활성화
 면제자 교육년도, 교육번호를 안내에 따라 입력 후 교육이수확인 버튼 클릭
- ②번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
- ③번 1교시 교통법규를 제외한 다른 과목 비활성화 됨

①

응시자격 확인

자격구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종류	도로교통
시험구분	CBT (컴퓨터 시험)	면제여부	일반
일부면제자 교육 이수 확인	면제자교육년도 2021 면제자교육번호 교육이수확인 * 교육이수확인: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증 왼쪽 상단에 있는 수료번호 입력 ex) 수료번호가 '제 2020-011'호일 경우 면제자 교육년도 '2020' 선택, 면제자 교육번호 '2020011' 입력 후 교육이수확인 클릭		



②

웹 페이지 메시지
 ×

확인되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



③

응시과목 확인

필수과목 1	교통법규	필수과목 2	면제
필수과목 3	면제	선택과목	면제

○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증 샘플(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제2021-000호

수 료 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과정명 : 2021년 교통안전관리자 일부면제자교육

교 육 기 간 : 2021.5.10.~2021.5.21.

위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 년 5월 21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샘플(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Sample

문서 확인번호 : HRD-20121024105410-11614

관리번호 : 제2012-06-269501 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19	10.
	주소			

자격취득 사항	자격종목	합격일자	취득 당시 종목명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999.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999.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행정처분 사항	자격종목	처분 종류	처분일	처분내용

인적정보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본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원본의 진위여부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O-Net.or.kr>)에서 조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진위여부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력 가능, 인터넷 발행분 포함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경력)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명칭(업종) : 카센터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주소(주사무소소재지) :
4. 사업의 종류 : 전문정비업
5. 사업장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 2013.08.22. 법령 개정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 제발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
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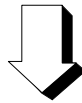
안 산 시 장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 실무경력 3년이 필요한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경력증명서(공단 서식) + (해당 경력)고용보험가입증명서 제출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co.kr/>)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②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시간 59:57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긴급재난기부금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일반근로자
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 > 나의 민원 >

원격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설치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업무상담 1588-0075
전산문의 1833-6000

관련법령 및 제도 상세안내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신청하기

증명원 신청/발급

민원증명원 신청/발급
민원증명원은 공민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신청/출력 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원의 종류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보험급여원부 출력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민원증명원 신청 절차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증명원을 선택합니다.
보험가입 증명원, 보험료, 완납 증명원 및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보험종류, 사업장관리번호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보험급여지급 확인원은 산재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재해일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사용용도,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③ 보험구분은‘고용’, 조회구분은‘사용’에 체크 후 [조회]

* 일용직 근무 경력의 경우 조회구분을‘일용’에 체크

일반근로자
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 > 나의 민원 >

원격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설치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업무상담 1588-0075
전산문의 1833-6000

관련법령 및 제도 상세안내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신청하기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보험구분 ☐ 산재 ☒ **민원** 조회구분 ☒ **사용** ☐ 일용 **조회**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근 자격 현황

취득일/상설일	사업장 명	사업장관리번호

④ 해당 경력에 체크한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신청] 또는 [메일전송]

○ 자격관리 상세이력

연번	사업장명	처리기관	자격변경일	상태	65세 이상 실업률 상여부	선택
1				취득	N	☒
2				상실	N	☐
3				취득	N	☐

○ 이력내역서 발급

직종포함여부 ☐ 예 ☒ 아니오

⚠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샘플

접수번호		☐ 산재보험 ☒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근로자용)		
4120-2020-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대상 사업장	명칭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재지	(39660)경북 김천시 []		
자격내역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2014년 06월 02일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복제·유통 또는 타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AMPLE				
2020년 05월 26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 				

6. 국가기술자격별 상위 자격증 현황

자격분야	자격구분	자격명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도로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검사	-	-	-	-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	-	-	-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자동차차체 수리	-	-	-	-
		건설기계기관 정비기능사	건설기계 기관정비	-	-	-	-
		건설기계차체 정비기능사	건설기계 차체정비	-	-	-	-
		건설기계 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	-	-	-	-
철도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철도차량 산업기사	-	철도차량	철도차량	-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객화차정비기능사 객화차정비기능사 보선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	철도동력차 기관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 기관정비	철도동력차 기관정비	-	철도차량정비	-
		철도동력차 전기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	철도차량정비	-
		객화차정비 기능사	객화차정비	객화차정비	-	철도차량정비	-
		보선기능사	보선	철도보선	철도보선	-	-
		철도운송 기능사	철도운송	철도운송	-	-	-
		철도전기신호 기능사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	-	-	-

자격분야	자격구분	자격명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항공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항공 산업기사	-	항공	항공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항공기체 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	-	-	-	항공기체
		항공기관 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	-	-	-	항공기관
		항공장비 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	-	-	-	-
		항공전자 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	-	-	-	-
항만	조선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조선	-	조선
		컴퓨터응용 가공산업기사	-	컴퓨터 응용가공	-	-	-
		항로표지 산업기사	-	항로표지	항로표지	-	-
	선체건조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	선체건조 기능사	선체건조	-	-	-	-
		동력기계 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	-	-	-	-
		항로표지 기능사	항로표지	-	-	-	-
공통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산업안전 산업기사	-	산업안전	산업안전	-	-

7. 국가기술 자격증 연혁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1) 건설기계정비기능장

'74.10.16.	'96.01.01.	'21.05. 현재
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2) 건설기계정비기사

'74.10.16.	'99.03.28.	'21.05. 현재
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3)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74.10.16.	'81.01.01.	'84.01.01.	'96.01.01.	'99.03.28.	'21.05. 현재
중기정비기사2급	중기정비기사2급	중기정비기사2급	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중기정비기능사1급	중기정비기능사1급	중기정비 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 기능사1급		
	중기검사기능사1급				

4) 건설기계정비기능사

'74.10.16.	'92.03.01.	'96.01.01.	'99.03.28.	'12.01.01	'21.05. 현재
중기정비기능사 2급	택 1	택 1	택1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중기차체 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 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 정비기능사		
	중기기관 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 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 정비기능사		

5) 자동차정비기능장

'74.10.16.	'84.01.01.	'21.05. 현재
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6) 자동차정비기사

'74.10.16.	'99.03.28.	'12.01.01	'21.05. 현재
자동차정비기사1급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1급	자동차검사기사		

7) 자동차정비산업기사

'74.10.16.	'84.01.01.	'96.01.01.	'99.03.28.	'12.01.01	'21.05. 현재
자동차정비기사2급	자동차정비기사2급	자동차정비기사2급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기능사1급	자동차정비기능사1급	자동차정비기능사1급			
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검사기사2급	자동차검사기사2급	자동차검사기사2급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1급	자동차검사기능사1급	자동차검사기능사1급			
		(신)자동차다기능 기술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8) 자동차정비기능사

'74.10.16.	'84.01.01.	'92.03.01.	'96.01.01.	'99.03.28.	'12.01.01	'21.05. 현재
자동차기관 기능사2급	자동차정비 기능사2급	자동차기관, 정비기능사 2급 중 택일	자동차정비 기능사2급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기능사2급		자동차새시, 정비기능사 2급 중 택일				
자동차새시 기능사2급		자동차전기, 정비기능사 2급 중 택일				
자동차전기 기능사2급						
자동차검사 기능사2급	자동차검사 기능사2급	자동차검사 기능사2급	자동차검사 기능사2급	자동차검사 기능사		

9)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92.03.01.	'99.03.28.	'21.05. 현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2급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10) 산업안전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			

11) 산업안전산업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공안전기사2급			
전기안전기사2급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 철도차량정비기능장

'74.10.16.	'99.03.28.	'21.05. 현재
철도동력장치기능장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차량정비기능장

2) 철도차량기사

'74.10.16.	'99.03.28.	'21.05. 현재
철도차량기사1급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사

3) 철도차량산업기사

'74.10.16.	'92.03.01.	'99.03.28.	'09.01.01	'21.05. 현재
철도차량기사2급	철도차량기사2급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차량 산업기사	철도차량 산업기사
철도동력차 기관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 기관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 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 전기기능사1급	철도동력차 전기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 전기정비산업기사		
객화차정비기능사1급	객화차정비기능사1급	객화차정비산업기사		

4) 철도토목기사

'93.10.01	'99.03.28.	'14.01.01	'21.05. 현재
철도보선기사1급	철도보선기사	철도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5) 철도토목산업기사

'93.10.01	'96.01.01.	'99.03.28.	'12.12.21	'21.05. 현재
철도보선기사2급	철도보선기사2급	철도보선산업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6) 철도차량기술사(변경사항없음)

7) 철도신호기술사(변경사항없음)

8) 철도신호기사

'82.04.29.	'92.03.01.	'99.03.28.	'21.05. 현재
신호보안기사1급	철도신호기사1급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기사

9) 철도신호산업기사

'74.10.16	'92.03.01.	'99.03.28.	'02.07.01	'21.05. 현재
신호보안기사2급	철도신호기사2급	철도신호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신호보안기능사1급	폐지	폐지		

10) 철도전기신호기능사

'74.10.16	'92.03.01.	'99.02.05	'12.01.01	'21.05. 현재
신호보안기능사2급	철도신호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11) 철도운송산업기사

'74.10.16.	'99.03.28.	'06.01.01	'21.05. 현재
열차조작기능사1급	열차조작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12) 철도운송기능사(현재 폐지)

13) 철도토목기능사

'74.10.16	'99.03.28.	'14.01.01	'21.05. 현재
보선기능사2급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

14) 철도차량정비기능사

'74.10.16.	'92.03.01.	'99.03.28.	'09.01.01.	'21.05. 현재
철도동력차 전기기능사2급	철도동력차 전기정비기능사2급	철도동력차 전기정비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 기관정비기능사2급		철도동력차 기관정비기능사		
객화차정비기능사2급		객화차정비기능사		

15) 산업안전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			

16) 산업안전산업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공안전기사2급			
전기안전기사2급			

17)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변경사항없음)

18) 디젤차량운전면허(변경사항없음)

19)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변경사항없음)

20)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변경사항없음)

21) 철도장비운전면허(변경사항없음)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1) 항공기관기술사

'74.10.16.	'92.03.01.	'21.05. 현재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술사(항공장비)		

2) 항공기사

'74.10.16.	'99.03.28.	'21.05. 현재
항공기사1급	항공기사	항공기사

3) 항공산업기사

'74.10.16.	'84.11.15.	'99.03.28.	'21.05. 현재
항공기사2급	항공기사2급	항공산업기사	항공산업기사
-	(신)항공정비기능사1급		

4) 항공기체기술사

'74.10.16.	'92.03.01.	'21.05. 현재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5) 항공기체정비기능사

'84.11.15.	'99.03.28.	'21.05. 현재
항공기체정비기능사2급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6) 항공기관정비기능사

'84.11.15.	'99.03.28.	'21.05. 현재
항공기관정비기능사2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7) 항공전자정비기능사

'84.11.15.	'99.03.28.	'21.05. 현재
항공전자정비기능사2급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8) 항공장비정비기능사

'84.11.15.	'99.03.28.	'21.05. 현재
항공장비정비기능사2급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9) 산업안전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			

10) 산업안전산업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공안전기사2급			
전기안전기사2급			

11) 항공기관사(변경사항없음)

12~16) 항공정비사

'93.02.13.	'09.09.10.	'21.05. 현재
항공정비사	-	-
항공공장정비사(기체)	항공정비사(기체)	12) 항공정비사(기체)
항공공장정비사(피스톤발동기)	항공정비사(왕복발동기)	13) 항공정비사(왕복발동기)
항공공장정비사(터빈발동기)	항공정비사(터빈발동기)	14) 항공정비사(터빈발동기)
항공공장정비사(프로펠러)	항공정비사(프로펠러)	15) 항공정비사(프로펠러)
항공공장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16)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17) 운송용조종사(변경사항없음)

18) 사업용조종사(변경사항없음)

19) 자가용조종사(변경사항없음)

20) 항공사(변경사항없음)

21) 항공교통관제사(변경사항없음)

22) 운항관리사(변경사항없음)

□ 항만교통안전관리자

1) 조선기술사

'74.10.16.	'92.03.01.	'99.03.28.	'05.01.01.	'21.05. 현재
조선기술사(조선설계)	조선설계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조선기술사	조선기술사
조선기술사(선체)	선체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조선기술사(기관)	선박기계기술사	선박기계기술사		
조선기술사(검사)				

2) 조선기사

'74.10.16.	'99.03.28.	'21.05. 현재
조선기사1급	조선기사	조선기사

3) 조선산업기사

'74.10.16.	'92.03.01.	'99.03.28.	'21.05. 현재
조선기사2급	조선기사2급	조선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조선요철기능사1급	선체건조기능사1급		
선박조립기능사1급			
선체의장기능사1급			

4)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74.10.16.	'84.01.01.	'84.11.15.	'87.07.01.	'92.03.01.	'99.03.28.	'05.01.01.	'21.05. 현재
일반기계 기사2급	기계기사 2급	기계기사2급		일반기계 기사2급	생산기계 산업기사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정밀기계기사 2급(선반)							
정밀기계기사 2급(밀링)							
정밀기계기사 2급(연삭)							
정밀기계기사 2급(다듬질)							
		선박기계 기사2급(신설)	선박기계 기사2급	선박기계 기사2급	전산응용 가공기사2급	전산응용 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 기계기사2급 (가공)(신설)	전산응용 가공기사2급			
선반기능사 1급	기계가공 기능사1급	기계가공 기능사1급	기계가공 기능사1급	기계가공 기능사1급	생산기계 산업기사		

5) 항로표지기사(변경사항없음)

6) 항로표지산업기사(변경사항없음)

7) 항로표지기능사(변경사항없음)

8) 선체건조기능사

'74.10.16.	'92.03.01.	'99.03.28.	'05.01.01.	'21.05. 현재
선체의장기능사2급	선체의장기능사2급	선체의장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조선요철기능사2급	선체가공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조립기능사2급			

9) 동력기계정비기능사

'74.10.16.	'96.01.01.	'02.07.01.	'21.05. 현재
선박기관장의장기능사2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10) 산업안전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			

11) 산업안전산업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공안전기사2급			
전기안전기사2급			

12) 4급 이상의 항해사(변경사항없음)

13) 4급 이상의 기관사(변경사항없음)

14) 4급 이상의 운항사(변경사항없음)

15) 2급 이상의 통신사(변경사항없음)

□ **삭도교통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			

2) **산업안전산업기사**

'74.10.16.	'84.01.01.	'99.03.28.	'21.05. 현재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공안전기사2급			
전기안전기사2급			

8.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경력증명서(공단 서식)

(앞 쪽)

경력(재직)증명서					
①주소	(②전화번호 :)				
③성명 (한글)			④생년월일		
⑤자격 증명	⑥자격취득일		⑦자격증번호		
증 명 사 항	⑧재 직 기 간			⑨ 소 속 및 직위	⑩담당업무내용 (자격증과 관련된 해당 실무)
「교통안전법」 제5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⑪발 급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기관명 : _____ 주 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_____ 대표자 : _____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재직)증명서 작성방법

- ①주소 : 주민등록지상 주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②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③성명 : 한글로 기재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④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앞 6자리만 기재합니다
- ⑤자격증명 : 제출하는 자격증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자격취득일 : 자격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⑦자격증번호 : 자격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⑧재직기간 : 기간을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⑨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⑩담당업무내용 : 자격증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만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⑪발급자 :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비고

1. ㉔ 구비서류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에 한함)"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각 목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작성방법

1. 음영표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3. ⑤, ⑦의 주소는 우편번호 및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4. ⑥의 연락처는 자택의 전화번호와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5. ⑧의 응시분야는 해당 분야에 √표를 해야 합니다.
6. ⑨의 선택과목은 응시분야의 해당 선택과목을 적습니다.
7. ⑩의 면제과목은 면제받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 √표를 한 후, ()안에 면제받는 과목명을 적습니다.
8. ⑪, ⑫의 면제사유 및 구비서류는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9. ⑬, ⑭은 ③, ④와 같게 적어야 합니다.
10. 수수료: 시험시행 공고에 따른 소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1.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중 ⑮의 표기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접수된 응시원서(원본)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빠뜨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재교부 신청시에는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쪽 위에 놓고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한 가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입란 외의 부분에 적거나 밑줄이나 그 밖의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 등은 금지됩니다.
6. 부정행위자·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7.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환불신청서(공단 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환불신청서

		담 당	처 장

응시시험명 (응시분야)	교통안전관리자 (분야)	수험번호	
응시 차수	2021년 차	시험 접수일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주 소			
접수 금액		환불금액	
환불신청 사유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2021년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중 (필기)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본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신청일 :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응시 분야 : 도로 / 철도 / 항공 / 항만 / 학도 중 선택 응시분야를 작성

■ 환불 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반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 출금의 경우 해당 카드 및 은행계좌로 취소 처리됨.

11. 원서접수처 및 시험 장소(고객 콜센터 1577-0990)

☞ 접수인원 초과(선착순)로 접수 불가능 시 : 타지역 시험장소에 접수

시험장 · 자격증발급처	접수·교부장소	주 소	안내전화
	서울본부(구로)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구로검사소 내 3층	02-372-5347
	경기남부분부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031-297-9123
	대전세종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042-933-4328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053-794-3816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051-315-1421
	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062-606-7631
	인천본부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032-831-6704
	강원본부	(24397) 강원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10(석사동)	033-240-0101
	충북본부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043-266-5400
	전북본부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	063-212-4743
	경남본부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창원스마트타워 2층	055-270-0550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변영로 90-1(달동) 향사랑 병원 빌딩 8층	052-256-9373
	제주본부	(63326) 제주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064-723-3111
	화성드론자격시험센터	(18247)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삼존리)	031-645-2100
자격증발급처	교부장소	주 소	안내전화
	강릉검사소	(25523)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10(홍제동)	033-646-5000
	충주검사소	(27335)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6로 27(금릉동)	043-853-5050
	홍성검사소	(3224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남장리)	041-632-5837
	세종검사소	(30154) 세종 종합경기장로 29-5(대평동)	044-868-0515
	안동검사소	(36744)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13(수상동)	054-858-8447
	포항검사소	(37866)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괴동동)	054-285-2134
	진주검사소	(52809) 경남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상평동)	055-752-0814
	목포검사소	(58658)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상동)	061-283-5004

※ 14개 시험장에서 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8개 검사소에서 자격증 발급

※ 주차시설이 부족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 유의사항 1. 인터넷 접수 : 모든 응시자(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접수)
2. 방문 접수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에 방문하여 접수
☞ 타 지역 접수 불가(예 : 경기남부분부에 방문하여 부산본부 시험 접수 불가)

12. 자주하는 질문

Q) 인터넷 접수 시 등록기준지(구 본적)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A) 읍·면·동까지만 일치하는 유사한 주소 선택(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며, 기본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하여 발급 가능)

Q) 원서접수 후 사진 수정 방법

- A)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하여 수정 요청

※ 사진 변경 수정 가능 조건 : 기 접수한 사진과 변경하려고 하는 사진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동일인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

Q)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시험과목의 해석범위 등

A) 1) 관련 조문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 7])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2) 전제조건

- 석사학위 소지(수료는 인정 불가)
- 전문학사(전문대학 등 4년제 이하)등 졸업 후 편입하여 논문제출 등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3) 면제과목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과목(B-도 가능하며, C 이하만 아니면 인정)
-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수강 시 교육과정[curriculum] 제출

Q)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의 3년 이상일 때, 경력의 기준

A) 인정 가능한 근무 경력

-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 근무 경력
(자격증과 관련 없는 경리 및 단순 사무업무는 인정 불가)
- 자격증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관련분야에 근무한 모든 경력(다수 경력 합산 가능)
- 관련분야 청년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 근무 경력

※ 군경력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Q) (도로분야)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 A)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7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교통법규·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제도
(교육 이수 후 교통안전관리자 정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교육 주관부서 : 교통안전교육처(김가연 연구원/054-459-7654)

Q) 교통법규 과목 면제가능 여부

- A) 교통법규 과목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면제 불가

Q) 교통법규 과목의 시험 범위

- A) 교통법규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모두 출제

※ 시험일 기준 시행 중인 법만 출제(시행 예정은 포함 안 됨)

Q)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시험 시간 및 입·퇴실 시간 안내(p. 5 참고)

- A) 1교시는 교통법규 응시로 모든 응시자가 입실하여 시험 시행

2교시는 면제되는 과목 제외하고 응시하는 과목의 시험지만 배부되며, 30분이 지난 시점에 퇴실하여야 함

Q) 공학용 계산기 지참이 가능 여부

- A) 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초기화 및 외장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공학용 계산기 지참 가능

Q) 인터넷 원서접수 전자결제 시 에러가 날 경우

- A)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전자결제 지불대행사인 (주)KG이니시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결제 시 에러가 나는 경우는 이니시스 콜센터로 문의

※ 이니시스 콜센터 : 1588-4954 (이후 1-1-6 으로 연결하면 즉시 연결 가능)

또한, 일부 체크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권장

(응시자 본인 카드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Q) 인터넷 원서접수 전자결제 시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에러가 날 경우

A)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에러 발생 시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 사용 권장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을 사용하는데도 에러가 뜬다면 인터넷 실행 시 평소처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실행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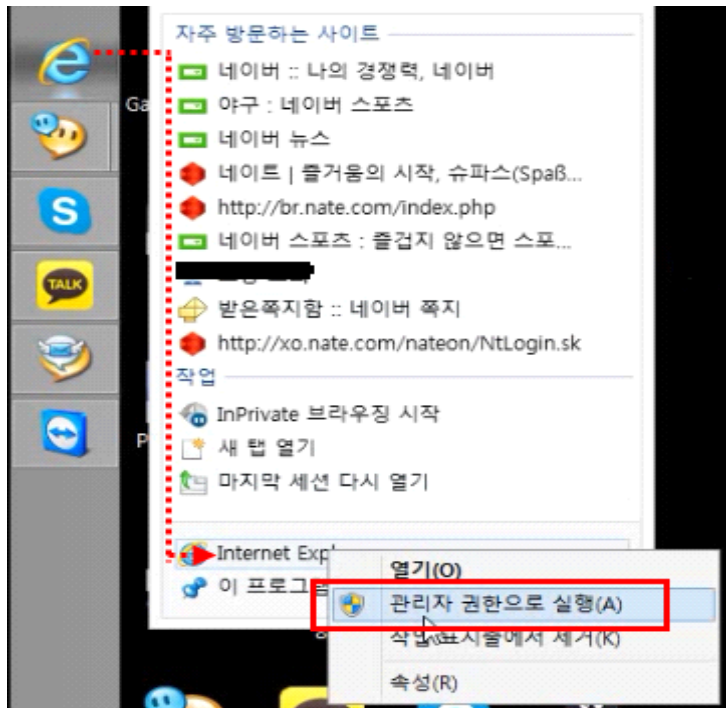
인터넷 접수시 전자결제 창이 안되는 경우 사용법

1) 윈도우 7 또는 Vista 운영체제 컴퓨터의 경우



2) 윈도우 8 운영체제 컴퓨터의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 후 Internet explorer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선택한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다음과 같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나오면 “예” 선택 후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재접속.